파주시 고시 제2025-430호

2025년 제2차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8월 27일

파 주 시 장

1. **고 시 명** : 2025년 제2차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2. **지정내역** :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30
3. **지정사유** : 산사태, 토석류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4. **고시일자** : 2025. 8. 27.
5. **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** :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10
   가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  나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   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6. 기타 문의 사항은 파주시 산림정원과/산림보호팀(☎ 031-940-462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토지조서 1부.
　　 2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. 끝.